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1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박해철 · 박홍배 · 송옥주
김정호 · 박 정 · 박지혜
이용우 · 박지원 · 이학영
이병진 · 김 윤 · 이광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한파·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를 “「근로기준법」 제100조, 「건축법 제20조 및 「농지법」 제34조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u>기숙사</u>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u>기숙사</u>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u>「근로기준법」</u>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 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u>기 숙사</u>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 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u>기숙사</u>의 구조와 설비 2. <u>기숙사</u>의 설치 장소 3. <u>기숙사</u>의 주거 환경 4. <u>기숙사</u>의 면적 5. 그 밖에 <u>기숙사</u>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u>주거시설</u>의 제공 등) ① ----- <u>주거시 설</u>을 ----- ----- <u>「근로기준법」</u> <u>제100조, 「건축법」 제20조 및</u> <u>「농지법」 제34조에서</u>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 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② ----- <u>주거시 설</u>을 ----- ----- ----- ----- ----- ----- -----. 1. <u>주거시설</u>----- 2. <u>주거시설</u>----- 3. <u>주거시설</u>----- 4. <u>주거시설</u>----- 5. ----- <u>주거시설</u> ----- -----

③ 제2항에 따른 <u>기숙사</u>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생 략) 1. (생 략)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u>기숙사</u>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 ----- <u>주거시설</u> ----- ----- -----. <u>제22조의3(주거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u>주거시설</u> ----- ----- ----- ----- -----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